
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9.

발 의 자 : 조경태 · 이성권 · 김대식
박성훈 · 정성국 · 윤영석
정연욱 · 김선교 · 서천호
조승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·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·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,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,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국유재산의 출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,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영구시설물의

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·조정하는 한편, 항만공사가 영구 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, 제27조, 제28조 및 제42조).
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3호 중 “제2조제2호나목”을 “제2조제1항제2호나목”으로 하고, 제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의2 중 “공사가 관리하는”을 “다음 각 목의”로, “범위”를 “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제4호의2”를 “제3호의2, 제4호의2, 제4호의3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물류장비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서비스업
가.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

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항만시설(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)

4의3.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업

7.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

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.

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공사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·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28조제4항 단서 중 “기부를 전제로”를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”로 한다.

제42조제1항 전단 중 “경비·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”을 “경비·보안·화물관리·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·운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~ 2의3. (생 략) 3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<u><신 설></u>	제8조(사업) ① ----- -----. 1. ~ 2의3. (현행과 같음) 3. -----제2조제1항제2호나목----- ----- 3의2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물류장비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서비스업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<u>다음 각 목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----- <u>가.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</u>
4. (생 략) 4의2. <u>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업</u> (항만 관리·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<u>범위</u> 에 한정한다) 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<신 설>

5. ~ 6의3. (생 략)

7.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
및 관리·운영 등 공사의 설
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
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업

8.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2
호의3, 제3호, 제4호의2, 제6
호, 제6호의2, 제6호의3 및 제
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
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
자 또는 출연

② · ③ (생 략)

<신 설>

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소유의 항만시설(「항만
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
항만시설을 말한다)

4의3.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
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
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
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
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·
운영에 관한 사업

5. ~ 6의3. (현행과 같음)

7.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
행할 수 있는 사업

8. -----
-----제3호의2, 제
4호의2, 제4호의3,--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
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.

제27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 ① (생략)

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·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·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8조(국·공유재산의 전대 등)

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에 따라 국·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7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공사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·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28조(국·공유재산의 전대 등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국가 또는 지방
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
로 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
으로-----

제42조(사업의 위탁 등)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<u>경비·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</u>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② ~ ⑦ (생략)	-----. 제42조(사업의 위탁 등) ① ----- ----- ----<u>경비·보안·화물관리·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·운영</u>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